임원보수규정

제 정 2007. 2. 7 개 정(1) 2009. 3. 30 개 정(2) 2011. 2. 15 개 정(3) 2012. 2. 6 개 정(4) 2014. 3. 3 개 정(5) 2015. 2. 6 개 정(6) 2016. 3. 7 개 정(7) 2017. 3. 28 개 정(8) 2018. 3. 8 개 정(9) 2019. 2. 28 개 정(10) 2020. 3. 4 개 정(11) 2021. 3. 3 개 정(12) 2021. 12. 15 개 정(13) 2022, 03, 04 개 정(14) 2023, 03, 08 개 정(15) 2024, 03, 04 개 정(16) 2025. 03. 1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원보수) ①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한다.

- 1. 기본연봉은 별표1과 같다. 다만 개별고용계약을 맺어 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서를 따른다.
- 2. 기본연봉은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21일 지급하고,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- 3. 제1호의 기본연봉에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다.
- 4. 임원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본연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다.
- 5. 성과급은 기본연봉에 성과급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- 6. 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, 1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다.
- 7. 별도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되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, 퇴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성과급은 퇴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경영 실적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급한다.
- 8. 평가대상기간중 차상위직 연임시 성과급은 각 직위별 재임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며, 1월 미만의 단수는 차상위직 재임기간에 합산하다.
- 9. 성과급 지급율 상한은 별표2와 같다. 다만, 개별 고용계약을 맺어 정할 경우에는 고용계약서를 따른다.
- ②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3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보수규정」을 준용할 수 있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7월 18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사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개정전 임원보수규정에 따른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칙(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칙(7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전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을 지급한다.

부칙(8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사장 206.509천원, 감사 165.207천원, 이사 165.207천원의 기본연봉을 지급한다.

부칙(9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전임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을 지급한다.

부칙(10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전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을 지급한다.

부칙(1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전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을 지급한다.

부칙(1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성과급지급률 상한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21년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는 성과급부터 적용한다.

부칙(1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전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을 지급한다.

부칙(1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전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을 지급한다.

부칙(15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칙(1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(별표1)

기본연봉 (연간)

(단위 : 천워)

구 분	급 액
사 장	237,171
감 사	189,727
이 사	189,727

(별표2)

성과급지급률 상한(연간)

구 분	금 액
사 장	기본연봉의 100%
감 사	기본연봉의 80%
이 사	기본연봉의 80%